

2020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규대비표

<2020. 2. 21.(금), 교원양성연수과>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된 사항임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1	다. 교사자격기준	9	Tip 1 보건교사(2급) 자격만 교육대학원 취득 불가 Tip 2 공주대학교만 사서교사에 부전공이 붙고 교육대학원 입학 가능함	9	삭제	- 보건교사(2급) 자격 설명 불필요 - 부전공 표시과목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에 한함
2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18	☞ 학적부 사본의 '교직과목'은 적색, '기본이수과목'은 청색, '전공과목'은 흑색으로 밑줄이나 V표기를 하여 식별하기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별도의 검정 사정표로 대치 가능)	18	삭제	불필요한 규제 완화
3	참고 교사자격 명칭변경	28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71년 「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도입	28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내용 오류 수정
4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33	1) 재교부 사유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로 한다.	33	1) 재교부사유 : 교원자격증 분실, 기재사항 변동, 훼손 등 기타 재교부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라 재교부 사유 추가
5		34	10) 재발급 방법 - 기타 모든 기재사항(자격기준,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34	10) 재발급 방법 - 기타 모든 기재사항(자격증 발급번호 , 자격기준,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내용의 명확화 (교명 변경 후 재교부할 경우, 발급번호 변경 사례 발생)
6	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35	2)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는 공문으로 보고하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을 공문의 본문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35	2)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는 공문으로 보고 하되,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불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한다.	서식은 공문 표지 및 불임 첨부 모두 가능
7			③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명을 기재		③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명을 기재 하되 , 교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명 병기 예) 부산여자대학교(현재:신라대학교)	교명이 변경된 경우 병기하도록 안내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8	8. 교원자격증 재교부	36	※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053-770-2564)	36	※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053-770-2653)	▪ 전화번호 변경																
9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46	㉔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란 제1호 대상자	46	㉔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실기교사란 제1호, 제5호 대상자	▪ 내용 오류 수정 및 제5호 기준 추가																
10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47	1) 현직 교원대상 무시험 검정 ① 검정기관: 시·도교육감 ② 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원 ※ 석사학위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어도 됨	47	1) 현직 교원대상 무시험 검정 ① 검정기관: 시·도교육감 ② 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현직의 교원 (기간제 교사 포함) ※ 석사학위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의 경우 현직교원이 아니어도 됨	▪ 대 법 원 판 결 (2015두 40248, '18.6.15.) - 기간제 교사도 자격 취득 가능																
11	2)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52	<table><tr><th>입학 년도</th><th colspan="2">전공 구분</th><th>전공과목</th></tr><tr><td>2009 ~ 2012 학년도</td><td>부 전 공</td><td>교 육 대 학 원</td><td>▪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td></tr></table>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09 ~ 2012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52	<table><tr><th>입학 년도</th><th colspan="2">전공 구분</th><th>전공과목</th></tr><tr><td>2009 ~ 2012 학년도</td><td>부 전 공</td><td>교 육 대 학 원</td><td>▪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td></tr></table>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09 ~ 2012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2008-119호, 2008.8.1.시행) 별표1에 따라 세부 기준 명시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09 ~ 2012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09 ~ 2012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53	<table><tr><th>입학 년도</th><th colspan="2">전공 구분</th><th>전공과목</th></tr><tr><td>2013 ~ 2015 학년도</td><td rowspan="2">부 전 공</td><td rowspan="2">교 육 대 학 원</td><td rowspan="2">▪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td></tr><tr><td>2016 학년도 이후</td></tr></table>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13 ~ 2015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2016 학년도 이후	53	<table><tr><th>입학 년도</th><th colspan="2">전공 구분</th><th>전공과목</th></tr><tr><td>2013 ~ 2015 학년도</td><td rowspan="2">부 전 공</td><td rowspan="2">교 육 대 학 원</td><td rowspan="2">▪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td></tr><tr><td>2016 학년도 이후</td></tr></table>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13 ~ 2015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2016 학년도 이후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13 ~ 2015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2016 학년도 이후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전공과목																			
2013 ~ 2015 학년도	부 전 공	교 육 대 학 원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2016 학년도 이후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12	다. 부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58	<table><tr><th>검정대상</th><th>입학연도</th></tr><tr><td>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td><td>2007학년 까지 (폐지됨)</td></tr></table>	검정대상	입학연도	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07학년 까지 (폐지됨)	58	<table><tr><th>검정대상</th><th>입학연도</th></tr><tr><td>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td><td>2007학년 입학생까지 (2008년부터 폐지됨)</td></tr></table>	검정대상	입학연도	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07학년 입학생까지 (2008년부터 폐지됨)	• 내용의 명확화																												
검정대상	입학연도																																									
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07학년 까지 (폐지됨)																																									
검정대상	입학연도																																									
사범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	2007학년 입학생까지 (2008년부터 폐지됨)																																									
13	라. 복수 자격기준의 적용	59	라. 복수 자격기준의 적용	59	라. 복수 전공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 의 적용	• 내용의 명확화																																				
14	마. 복수·부전공 자격증의 발급 및 명부 작성 요령	59	(예시) <table><tr><th>자격증 번호</th><th>표시과 목</th><th>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발급 연월일</th><th colspan="3">자격기준</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조</td><td>항</td><td>호</td></tr></table>	자격증 번호	표시과 목	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	성명	생년월일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59	(예시) <table><tr><th>자격증 번호</th><th>표시과 목</th><th>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th><th>성명</th><th>주민등록 번호</th><th>발급 연월일</th><th colspan="3">자격기준</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조</td><td>항</td><td>호</td></tr></table>	자격증 번호	표시과 목	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17.8.17. 시행)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에 따름
자격증 번호	표시과 목	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	성명	생년월일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자격증 번호	표시과 목	전공구분 (주/부/복 수전공)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15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67	<table><tr><td>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td><td>교육실습</td><td>•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td></tr></table>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67	<table><tr><td>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td><td>교육실습</td><td>•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td></tr></table>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17.8.17. 시행) [별표 3] 개정에 따름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2017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①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16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70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①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이나 부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제6조 3항)	• 부전공은 현직교사만 가능하며, 현직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실습 면제																																				
17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72	없음	72	※ 대학은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예)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내용 등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19.9.17. 시행) 별표3 비고에 따름																																				
18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 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교육부 고시(제2014-48호,2014.9.2시행) 개정 시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삭제																																				
19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 (시·도교육 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내용의 명확화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20	1)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73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반드시 재학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73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단,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	▪ 내용의 명확화
21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74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 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 인정 가능.	74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 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 (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이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안내
22	2. 사범대학 졸업자의 검정기준 관련 규정	82	○ 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복수 자격기준은 반드시 제5호(교직과정 이수자의 자격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적용함(2007년 2월 졸업자부터)0	82	삭제	▪ 복수전공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의 적용 변경 (교원양성연수과-805, 806, '19.2.14)
23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92	1) 선발시기 ☞ 1학기 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92	1) 선발시기 ☞ 1학기 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신청 이후 휴학 또는 학과 폐지 등으로 선발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 등 조치 필요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과정의 민원 발생 사례 안내
24	VI.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101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 구분	101	○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 구분 ※ 재교육 과정 재학 중에 현직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졸업 시에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 부전공 자격 취득은 입학 전 여부와 상관 없이 무시험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라면 가능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25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1	※ 교원자격 검정 시는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등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기준 준수	101	삭제	▪ 교육부 고시(제2017-126호)제4조제3항에 따라 교육대학원은 적용 대상 아님
26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103	⑥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산업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한정)	103	⑥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산업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한정)	▪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2018.5.29.시행)에 따름
27	가. 전문상담 교사(1급) 양성과정	113	①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13	①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 일치) 이 있는 자	▪ 교육경력의 범위 명확화
28			없음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 시 공고문에 “2급 이상의 자격증소지 및 해당 경력(자격증과 동일한 학교급·표시과목) 3년 이상 필수” 명시하고, 대학원 입학 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함	▪ 대학원 입학 시 자격증 및 경력 확인 부재로 민원 발생
29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검정 시 유의사항	115	○ 석사학위 연계과정 이수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무시험검정 요건인 3년의 교육경력에는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함.(교육대학원 재학 중 경력은 제외)	115	삭제	▪ 교육대학원 입학 전의 경력만 인정 가능함
30	가.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121	①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초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직업특수교육과 등)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유아특수교육과)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거나, 유아교육과와 연계하여 유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121	①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는 해당학과의 교육과정 내에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모든 이수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하거나,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체육,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의 경우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31	VII 특수학교 교사 무시험검정	129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자격증 부여방법 - 주전공과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표기	129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자격증 부여방법 - 주전공과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주전공 표시 과목 표기(단,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 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 가능)	▪ 교육부 고시(2008-119호, 2008.8.1.시행) 제10조 제4항에 따름					
32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35	1. 이수학점기준	135	1. 이수학점기준 <table><tr><td>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 는 사람</td><td>교직과목 4학점 이상</td></tr></table>	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 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 는 사람	교직과목 4학점 이상										
33	VIII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136	없음	136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 [별표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최저이수기준</th></tr><tr><th>실기교사</th></tr><tr><td>교직이론</td><td>○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td></tr></table>	구분	최저이수기준	실기교사	교직이론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 실기교사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명시
구분	최저이수기준										
	실기교사										
교직이론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34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교 사자격기준 중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대상자		1.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대상 및 검정 기관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 중 실기교사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제5호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35			※ 제5호(19.6.19. 시행 예정) 관련 교원자격검정 사항은 추후 별 도 공문으로 안내		삭제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2019.6.19. 시행) 개정 에 따름 ▪ 실기교사 제5호에 의한 자격 취득 및 발급 방법 안내					
36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2)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졸업자: 시·도 교육감		나.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기관 2)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 졸업자 및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시·도 교육감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고
37	실기교사 제5호에 의한 자격 취득 관련 참고사항	139	없음	139	실기교사 제5호에 의한 자격 취득 관련 참고사항 ◦ 자격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 실기교사 제5호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 취득 기준) : 실기교사 제5호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4개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교직과목 2과목(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교직과목 등 이수 방법 안내 ◦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소속 대학의 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학과에서 개설한 교직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이수 및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가능 ◦ 실기교사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직과목(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이수 및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가능 ※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 불가 ◦ 무시험검정 실시 기관 : 시·도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한 표시과목 기재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6항에 따라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분야의 세부 항목 병기(併記) 가능 ◦ 무시험검정 신청 - 신청기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대회 입상 증빙서류 ▶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서식18] (교직과목 이수 및 성적 증명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여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여부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 (2019.6.19. 시행) 개정에 따름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2019.6.19. 시행) 개정에 따름 ▪ 실기교사 제5호에 의한 자격 취득 및 발급 방법 안내

번호	내 용	쪽수	변경 전	쪽수	변경 후	비 고
38	X. 질의응답	150	타.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152	타.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비영리기관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반복 문의로 정확히 안내
39	X. 질의응답	156	없음	158	타. 대학교명이 변경되어 재교부 할 경우, 자격증 발급번호 및 직인 등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자격증 재교부 시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일,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기준 등의 기재사항은 최초 발급 당시와 동일해야 하며, 부처명칭, 엠블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재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함	▪ 대학교명이 변경되어 재교부할 경우, 재교부 방법 명확히 안내